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4. 29.(수) 10:01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표철수 부위원장  
허 욱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01분 개회 】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결안건 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의결안건> 3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안건 가>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고, 그 외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비공개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 이어서 공개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5. 전차회의록 확인

### ○ 한상혁 위원장

- 안건 심의에 앞서 제20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5-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제21차 및 제22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4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5-2. 외부에서 요구한 속기록 제출 의결

#### ○ 한상혁 위원장

- 서울중앙지검에서 우리 위원회에 2020년도 제18차 전체회의 (주채널에이 의견청취 비공개 회의록 및 속기록 등에 대한 수사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회의운영 규칙」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검찰이 요구한 위원회 비공개 회의록과 속기록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자료제출을 의결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10시 03분 】

## 6. 의결사항

### 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2020-23-104) (비공개)

【 10시 13분 】

○ **한상혁 위원장**

- 공개 안전 심의를 위해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 **한상혁 위원장**

- 정리가 되었으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개 안전 심의에 앞서, 방금 전에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되신 표철수 신임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철수 부위원장님,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철수 부위원장**

-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면구스럽기도 합니다. 위원들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발휘해 주신 존경하는 허 욱 위원님과 안형환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방통위의 정책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우리 위원회는 2008년도 1기 위원회부터 최근까지 2,800여건의 안전을 심의·의결했는데 대부분의 안전들을 합의정신에 따라 전원 합의로 처리해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도 이런 합의정신에 투철한, 철저한 이런 위원회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기초를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함께 천명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는 이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합의제 원칙에 충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철수 부위원장님께서도 이런 합의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개 안전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0-23-105~111)**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2항, 제25조제2항 등을 위반한 7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 제64조의3, 제76조제1항·제2항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배경은 유출 신고 사

업자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소지를 인지한 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 7개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요경과입니다. 사실조사는 '19년 2월에서 8월까지 사전통지 및 사업자 의견접수는 '19년 4월부터 9월까지 했습니다. 조사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일반현황입니다. (주)밀리의서재는 온라인 도서 정기구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유)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입니다. (주)엔앤비랩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입니다. (주)엘림넷은 부가통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올애즈컴퍼니는 전자상거래업입니다. (주)지음커뮤니케이션즈는 홈페이지 제작업체입니다. 그리고 카페24(주)는 쇼핑몰 솔루션 제공 및 호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경로 및 유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밀리의서재는 SQL 인젝션 공격으로 이용자 이메일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유출 항목은 이메일 정보입니다. 117,800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유)는 관리자 과실로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56,276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주)엔앤비랩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관리자 페이지에 누군가 접속하여 회원정보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했습니다. 아이디,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약 1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유출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주)엘림넷은 다운로드 취약점을 이용하여 웹페이지 소스에 저장된 관리자 계정을 해커가 탈취하여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등 26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주)올애즈컴퍼니는 역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정보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했습니다. 아이디,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약 4만여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유출여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주)지음커뮤니케이션즈는 미상의 해커로부터 협박메일을 수신하였지만 유출건수와 유출 항목 등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접속기록이 없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은 1개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중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사업자가 3개사, 그리고 문서를 통해 위탁하지 않은 사업자가 1개사, 유출신고 및 이용자 통지 지연을 한 사업자가 3개사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접근통제에 여러 가지 세부 내용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주)엔앤비랩 등 총 19개사가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속기록을 위반한 6개사,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암호화 위반은 3개사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악성프로그램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1개사, 그리고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가 3개사입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사업자는 3개사입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 동의를 위반한 사업자는 1개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자 의견은 모두 위반사항을 개선 완료했으므로 선처를 요청해 온 내용이었습니다. 시정조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명령은 (주)밀리의서재 등 7개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명하고자 합니다. 위반행위 즉시 중지, 시정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이는 과징금 부과 사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입니다. <나> 과징금 부과대상입니다. (주)밀리의서재 등 6개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주)밀리의서재는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도 해당하여,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밀리의서재에

대한 과징금 부과입니다. (주)밀리의서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제7호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관련 매출액입니다. (주)밀리의서재의 각 위반행위와 관련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9억 1,043만 9,000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각 산정했습니다. 기준금액은 (주)밀리의서재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법정대리인 미동의 등 각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를 적용하여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아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을 1,000분의 21을 곱하여 기준금액을 1,911만 9,000원으로 각 산정했습니다. 필수적 가중·감경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관련 위반기간이 1년 이내 이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법정대리인 동의 관련 위반기간은 2년 초과에 해당 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956만원을 가중했습니다. 감경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은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965만원을 각 감경 했습니다. 추가적 가중·감경 관련해서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191만 2,000원과 382만 4,000원을 각 감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징금은 (주)밀리의서재에 대하여 총 2,2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과징금 산출내역(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유) 등 5개사의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를 시정명령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유)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많지 않아 과징금 부과에 실효성이 없고, (주)엘림넷은 유출규모가 적고, 역시 위반행위 관련한 매출액이 많지 않아, 과징금 부과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엔앤비랩의 경우 DB접속기록을 14일간 보관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위반행위 관련한 매출액이 많지 않아 과징금 부과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올애즈컴퍼니와 (주)지음커뮤니케이션즈는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이 3개사는 차후 수사기관에서 해커를 검거하여 유출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를 재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주)밀리의서재 등 7개사가 해당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 등록번호 사용제한을 위반한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유)입니다. 기준금액은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적용하겠습니다. 가중 및 감경 관련해서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고,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유)는 중소기업으로 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20%인 200만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과태료는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유)에 대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위반한 (주)밀리의서재 등 3개사입니다. 기준 금액은 역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각 적용하겠습니다. 가중·감경 관련해서 특별한 가중할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 중 법규 위반 행위를 중지하고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시정을 완료한 (주)밀리의서재 등 3개사에 대해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각 감경하고자 합니다. 최종과태료는 (주)밀리의서재 등 3개사에 대해 각 3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위반한 (주)엔앤비랩입니다.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적용 하겠습니다. 가중·감경 관련해서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 중 법규 위반 행위를 중지하고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150만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를 위반한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유) 등 3개사입니다. 기준

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각 적용하겠습니다. 과태료 가중 관련해서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주)엔앤비랩과 (주)올애즈컴퍼니 2개사는 기준 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각 가중하고 감경 관련해서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유)의 경우 중기업으로 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20%인 200만원을 감경 하고자 합니다. 최종과태료입니다. (주)엔앤비랩, (주)올애즈컴퍼니 등 2개사에 대해 과태료 1,300만원을 각 부과하고,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유)에 대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주)밀리의서재 등 7개사입니다. 기준 금액은 1,000만원을 각 적용하겠습니다. 과태료 가중 관련해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인 (주)엔앤비랩, (주)올애즈컴퍼니 2개사는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각 가중하고, 위반행위가 3개 이상인 (주)밀리의서재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각 가중하겠습니다. 감경 관련해서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시정을 완료한 (주)밀리의 서재 등 7개사에 대해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각 감경하고자 합니다. 최종과태료입니다. (주)지음커뮤니케이션즈, 카페24(주) 2개사에 대해 과태료 각 500만원, (주)엔앤비랩, (주)올애즈 컴퍼니 2개사에 대해 과태료 각 800만원, (주)밀리의서재,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유), (주)엘립넷 3개사에 대해 과태료 각 1,0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주)밀리의서재 등 3개사입니다. 기준금액은 1,000만원을 적용하겠습니다. 가중·감경 관련해서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고, 조사 과정 중 법규 위반 행위를 중지하고,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시정을 완료한 (주)밀리의서재 등 3개사에 대해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각 감경하고자 합 니다. 이에 따라 (주)밀리의서재 등 3개사에 대해 최종과태료 500만원을 각 부과하고자 합니다.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사 총 1억 2,350만원이 되 겠습니다. <라> 고발 사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9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의 고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위반사업자에 대한 고발여부를 검토한 결과, 고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마> 조사결과 수사기관 이첩입니다. 애니맥스브로드 캐스팅코리아(유) 등 3개사가 해당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3조제1호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조사 당시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 코리아(유)는 탈퇴를 신청한 2,518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고, (주)지음 커뮤니케이션즈는 온라인 견적문의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5,031건을 보유하고 있었 으며, 카페24(주)는 고객문의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첨부파일 49,383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 고발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정조치 통보는 5월에, 이행점검은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무엇보다 지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법규 위반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큰 사업자, 작은 사업자 연속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표철수 부위원장

- 대충 유형은 2가지인데 하나는 해커에 의해서 개인정보보호가 침해당했을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의 관리자나 사람의 부주의, 실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감경기준을 낮추어서 적용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와 같은 법규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정을 완료했다면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50%씩 감경해 주는 것이 맞는지, 이제는 이런 것도 감경률을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 되었으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보완조치를 하는 것이 사업자들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되어서 그것은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추후 업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이 되면 이 감경 사항은 모두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하든지, 아니면 좀 더 감경비율을 낮추는 것까지도 고려해서 차후 고시 개정할 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일단 원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향후 제도 개선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표철수 부위원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보고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차 방통위가 강조해 오고 또한 이행 실적을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자들의 인식과 보호조치 수준이 낮다는 생각입니다. 피심인 가운데 (주)밀리의서재는 월정액으로 전자도서를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책을 보고 책에 대한 포스트를 쓰면 다른 사람이 와서 댓글을 달고 소통하는 블로그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화재의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의 접근통제나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했고, 특히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문제 점이 드러났습니다. 피심인이 이번 과징금 처분의 계기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강화가 이것이 비용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임을 깨닫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신규 사업자들, 특히 벤처 사업자들 모두가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니맥스브로드

캐스팅코리아(유)는 애니맥스라는 애니메이션 전문PP 채널사업자입니다. 방송·통신 융합 사업을 위해서는 방송법뿐만 아니라 망법 등 여타 법규도 준수할 책무가 있습니다. 다만,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유) 등 5개사가 위반행위 관련된 매출이 작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에 실효성이 적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서 과징금 부과를 시정명령으로 갈음한다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위반,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공개 위반, 처리위탁을 문서에 의하지 않은 위반, 유출 통지 위반, 보호조치 위반과 유효기간제 위반에 대한 각사별 과태료 처분과 또 3개사에 대한 조사 결과 수사기관 이첩 등 그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되어서 보고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는 존경하는 표철수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는데 향후 과태료 감경 문제, 과징금 문제 이것 재검토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네이버 관련 안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7개, 어떻게 보면 소규모의 영세사업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접촉이 늘어남에 따라서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영세사업자들에 대해서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은 안타깝지만 이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방통위의 이런 시정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의 원안에 동의합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모두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네이버(주)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0-23-112)**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다> “네이버(주)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네이버(주)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네이버(주)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 제64조의3제1항 및 제76조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조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배경은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네이버(주)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경과는 유출신고는 네이버가 2019년 4월 30일, 현장조사는 2019년 5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통지 및 사업자 의견접수는 10월에 했습니다. 조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일반현황입니다. 네이버(주)는 1999년 6월 2일부터 인터넷 포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개인 또는 사업자의 블로그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수익 공유서비스인 '애드포스트' 서비스를 2009년 6월 29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과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위사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수집현황입니다. 네이버(주)는 블로그 광고 게시를 통해 수익을 배분하는 '애드포스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를 2009년 6월 29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2019년 5월 3일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총 28만 4,290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애드포스트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재무관리시스템 개발과정입니다. 네이버(주)는 매년 4월 애드포스트 수입 지급·전환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지급받은 수입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이용자들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메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네이버(주)는 원천징수영수증을 PDF파일로 생성하여 메일로 발송하는 기능을 포함한 재무관리시스템을 Flex언어로 개발하여 2010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사용했습니다. 이후 네이버는 신규로 재무관리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PDF메일로 생성하여 메일로 발송하는 소스코드를 잘못 개발하였고, 잘못된 소스코드를 2017년 3월 10일 시스템에 반영했습니다. 네이버(주)는 신규 재무관리시스템의 메일발송 기능에 대해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았고,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업테스트를 요청하였으나 특이사항은 회신되지 않았으며 2017년 5월 22일 실제업무에 사용하도록 배포했습니다. 신규 재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원천징수영수증 발송입니다. 네이버(주)는 2019년 4월 29일 21시부터 4월 30일 07시 33분까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대상자 2,334명을 선정하여 소스코드에 문제가 있는 신규 재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다> 개인정보 유출 경위입니다. 유출 경과 및 네이버(주) 측 대응입니다. 네이버(주)는 2019년 4월 29일 메일을 발송하고 4월 30일 이용자로부터 전화문의를 받고 최초로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메일관리시스템으로 열람하지 않은 메일을 회수하고, 메일삭제 스크립트를 통해 열람한 메일을 삭제했습니다. 또 같은 날 유출신고를 했습니다.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사실을 통지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입니다. 네이버(주)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대상자 2,334명에게 신규 재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6,758건의 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메일에 로그인한 이용자가 열람한 3,685건에는 총 194만 768개의 원천징수영수증, 중복제거 시 2,331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유출항목은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애드포스트 지급액 등입니다. 유출 경로입니다. 네이버(주)는 2016년 7월 26일 신규 재무관리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소스코드를 잘못 개발한 상태로 2017년 3월 10일 시스템에 반영하고 2019년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대상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라> 위반사항입니다. 첫째, 보안메일 열람 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위반입니다. 네이버(주)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비밀번호로 사용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고 있는 보안메일을 열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취급자 PC의 망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주)는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 분리하는 등 외부 인터넷망을 차단하지 않아, 신규 재무관리시스템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하여 이용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외부 인터넷망이 동시에 접속되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되었습니다. 네이버(주)는 신규 재무관리시스템을 개발한 후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한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에러·오류상황이 불충분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구성하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한 사실이 없으며,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시스템의 메일 발송기능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주)는 신규 재무관리시스템 서버에 애드포스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면서, 해당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마스킹하거나 해당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암호화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제출의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사실과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2019년 5월 10일 원천징수영수증 다운로드 사이트를 오픈하여 이용자 본인 확인 후 직접 영수증을 다운로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서버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고, 애드포스트서비스 망분리 조치, 또 다운로드 후 파일 비밀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개선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시정조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명령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이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명하고자 합니다. 위반행위 즉시 중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입니다. 과징금 부과사항입니다. 네이버(주)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주)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과징금 산정 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매출액입니다. 네이버(주)의 애드포스트 서비스 매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로 하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32억 4,043만 3,000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를 적용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을 1,000분의 21을 곱하여 기준금액을 6,804만 9,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필수적 가중·감경입니다.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은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402만 5,000원을 감경하겠습니다. 추가적 가중·감경 관련하여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신고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획득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701만 2,000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과징금 산출내역(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사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입니다.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적용하겠습니다. 가중 및 감경 관련해서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고, 시정조치 (안)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인 정보의 보호조치 위반입니다. 기준금액은 1,000만원을 적용하겠습니다. 가중 및 감경 관련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가 2개이므로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가중하고,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최종 과태료 산출 내역(안) <표>를 보시면 과태료는 총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정조치 통보는 5월에 이행점검은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는 개인정보 중요성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가 법규를 위반한 사건에 대해 사무처의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적정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가 개인 또는 사업자의 블로그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광고를 통해 들어온 수익금을 배분하는 애드포스트라는 수익 공유사업을 해 오다가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가 뒤늦게 삭제 조치를 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실패한 사건입니다.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 위반행위 2개에 해당하고 기간 내에 시정 완료했다고 50% 과태료를 감경했습니다. 과징금도 역시 필수 과징금 50%를 감경해 주고, 추가로 추가 감경 50%를 감경하겠다는 안입니다. 도합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과징금을 무려 75%를 감경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네이버에 원래 부과되어야 할 과징금 금액이 6,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두 번의 감경을 그것도 50%씩 두 번 하다 보니까 1,7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5,700여 만원을 감경해 주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 처분인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의 경우는 필수 감경요소와 또 추가 감경사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업무가 이번 여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넘어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시행령, 고시 부분에서 이런 비합리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태료 감경 부분이나 필수 감경 사유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그래도 위원들의 재량권 행사가 가능한 추가 감경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가 감경 사유로 자진 신고한 점, 조사에 대해 적극 협력한 점, 또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유지한 점을 고려해서 50% 감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판단하면 위원님들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 감경요소에 빠져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3가지입니다. 첫째, 사실상 국내 포털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네이버의 파급력을 고려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이버가 개인정보를 실수로 유출했을 때 그 파급력과 영향력은 다른 중소기업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큰 매체가 개인의 사적 정보를 유출했을 때와 작은 매체가 유출했을 때 그 파급력과 데미지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차별적 대응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네이버 덩치와 역할에 걸맞은 책임감이 고려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매출이 6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자축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수치로 6조원 돌파는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영향력과 중요도가 더 클수록 더 높은 법적 또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런 요소가 현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3항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 어디에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현 추세에 역행하는 이런 최대 포털업체의 안일함에 대한 사회적인 염려나 또 사회적 요구들을 우리가 과연 충분히 고민·고려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심지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각종 디지털 범죄에 악용하는데 정부의 조치는 미온적이라는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 등 프라이버시 침해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부과한 벌금액수가 무려 50억 달러, 한화로 약 5조 9,000억원이었습니다. 이 액수는 페이스북 지난해 매출 전체 9%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의 사례를 한국에 단순히 비교하는 데에는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IT 공룡기업에 대해 사회적·법적 책임이 얼마나 엄중할지를 묻는가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주)를 비롯한 이런 포털은 물론이고, 국내 모든 개인정보 관련 사업자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는 그런 행정을 방통위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 필수 감경 50%는 터무니없다고 보지만 원안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감경 사유는 부당하거나 너무 과하다고 판단해서 추가 감경 100분의 50 감경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김창룡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특히 추가 감경 부분에 대해서 김창룡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사이 저희가 해 왔던 것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그리고 조사에 협조했을 경우에는 한 동안 감경 30%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이것은 사업자가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력하는 것은 사업자의 기본 책무라고 해서 감경을 20%로 낮추었습니다, 그렇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표철수 부위원장**

-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을 획득·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에 100분의 50을 다시 감경하자 이렇게 안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창룡 위원님께서 이것은 감경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해 온 관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갑자기 이것을 감경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진신고를 했고 조사에 적극 협력했고, PIMS 인증을 획득해서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기회에 이런 데 대한 감경기준을 조금 높여서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고 100분의 30 정도만 감경하면

어떨까 수정 의견을 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적 가중·감경과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추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이번 안건은 국내 1위 포털사업자 네이버의 개인정보 법규 위반에 관한 것인데 위반 내용을 보면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매우 의심케 하는 사안입니다. 피심인 네이버는 대한민국 1위 인터넷기업입니다. IT 기업인데도 신규 재무관리시스템을 개발한 뒤에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한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걸러내는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제2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메일을 열람할 때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그리고 또한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도 않고 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1등 IT 기업에서 과연 이러한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조치도 소홀히 하고 있는 수준이었는가 하는 점들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서비스가 애드포스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 네이버 서비스 전체의 회원정보가 유출됐다면 이것은 전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마찬가지로의 수준인데, 네이버가 다른 사안들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의문이 듭니다.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이번 사안은 국민포털이라는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 케이스이기 때문에 기술진과 경영진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징금·과태료, 특히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서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액이 6조 6,000억원가량 됩니다. 6조 5,940억원인데 과징금 산출하기 위한 위반행위는 32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애드포스트 서비스를 정식 회계자료 내에서 이렇게 명확히 구분해서 분리 가능한 사안입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저희가 재무제표상으로 확인을 했고 분리되어서 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현재 적용은 이 위반 사안 32억원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위반행위 관련된 매출액이 적기 때문에 경제별인 과징금이 회사 매출 규모 6조 6,000억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필수적 감경 외에 추가로 50%를 감경하는 안을 사무처가 제시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자진신고와 조사에 협력한 것, PIMS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 외에 피심인의 회사 규모와 기술인력의 보유 수준, 과거 유사 사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는 추가 감경 수준은

20%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종 과징금은 기준금액의 필수적인 감경액 80%, 필수적인 감경 곱하기 0.8이지요. 20%만 감경하면 2,700만원을 초과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은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지금 추가 감경 20%이고, 부위원장님께서 30%라고 하셨습니다.

○ **표철수 부위원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아예 추가 감경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거대 기업인 네이버에서 이러한 개인정보유출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그 유출과정이 아주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도 더 충격적입니다. 특히 보안메일 열람 시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사용했다는 것은 아주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특히 외부 인터넷망과 차단시키지 않았다는 것, 개인정보를 암호화시키지 않았다는 점 등은 아마 어느 기업이든 해야 할 아주 상식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대 IT기업인 네이버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의 이번 처분결과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무처에서 마련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경기준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표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명확히 해서 사실 행정당국에서 행정처분의 대상들에게 뭐든지 예측 가능성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측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하루빨리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그런 것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예측 가능한 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사무처가 마련한 과징금 액수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 이 부분이 사업자에게 시혜를 베풀기 위한 이런 규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추가적 가중·감경에서 가중하는 사유가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감경사유는 자진신고, 조사협조, PIMS 인증 문제 이렇게 두고 있는데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감경사유를 두고 있는 것이고, 조사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감경사유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업자에 대한 시혜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중·감경 사유를 두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수준이나 그리고 아까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에 반영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지 그런 점들,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더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혜 차원에서 봐주고 안 봐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가중·감경 제도를 둬으로써 어떤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재검토는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은 사무처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지금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형평성 문제와 기존에 적용되었던 사례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예 추가 감경을 철회하는 안, 그리고 20%, 30%안, 원안 50%, 4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제가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저는 이 합의정신에 입각해서 제로와 20, 30%인데 그 중간을 선택해서 허 위원님이 제시한 20% 감경(안)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 표철수 부위원장

- 제가 30%를 감경하자고 의견을 냈던 것은 원래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력하면 원래 30% 감경해 주던 것을 전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목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너무 감경액수가 크다고 해서 20%로 그때 낮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쪽 네이버는 PIMS 인증을 획득·유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서 제가 아까 30%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네이버의 개인정보 법규 위반은 한 가지도 아니고 개인정보 취급자 컴퓨터 망 분리도 하지 않았고, 새 시스템을 개발해 놓고 테스트도 하지 않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이 낸 20% 감경에 다시 수정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은 모아졌는데 사무처에서 이 부분 수정된 의견의 재량권이라는 것이 범위가 있는데 지금 수정의견으로 20% 안으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의결해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 허 욱 상임위원

- 가능합니다.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면서 기준이 없다고 이야기했었는데 현재 망법 제64조의3제1항과 제6호 그리고 고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매출액 산정하고 기준금액 산정하고 그 다음에 필수적인 가중과 혹은 감경 그리고 추가적인 가중과 감경을 하는데 필수적인 가중은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지만 추가 가중·감경은 다 '퍼센트 이내'라고 정했습니다. 무엇이 몇 퍼센트를 한다고 고시에서 기준을 다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자진 신고, 조사협조, PIMS 인증, 50% 이내, 30% 이내라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 해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을 드린 것도 이러한 부분 까지, 회사의 매출규모 외에 기술의 수준, 관련된 사안들을 이 부분 고시의 기준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정신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는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무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시행령과 고시에 따르면 자진신고의 경우 100분의 30 이내 그리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그리고 PIMS 인증을 받은 경우 100분의 50 이내 각각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합해서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무처에서는 100분의 50 감경을 제시한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동안 PIMS 인증의 경우 사업자 규모에 관계없이 사안이 많지 않습니다만 50%를 감경해 주었고, 과거 어느 한 사업자의 경우 PIMS 인증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같이 조건부로 부가되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PIMS 인증 자체만으로 20%를 감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자진신고한 점, 적극 조사에 협력한 점을 합해서 보통 20% 정도를 감경해 줬기 때문에 PIMS 인증까지 합해서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재량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후로는 네이버에 준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후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해야 하는데 혹여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고려해서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지금 세 분이 20% 의견으로 가셨고, 원안에 동의하신다는 안 위원님이 계시는데...

○ 안형환 상임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업무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과거 사무처에서 특히 저희 위원회에서 해 왔던 어떤 틀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네이버의 경우 하면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가 새로운 틀을 만들 때 그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생각입

니다. 그 기업이 크기 때문에 더 벌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 기업은 작기 때문에 덜 받아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행정의 원칙에서 그것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원칙과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행정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만들고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분께서,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 한상혁 위원장

- 저는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아직 하지 않았지요. 세 분이 20%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원안을 유지하는 선에서 하고 표결은 기권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 사무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표결을 진행해야 할까요? 안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표결하는 것도 행정력 낭비라고 보고 그냥 통과시키십시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안전 내용 중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내용이지요?

○ 허 옥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과징금에 추가적 감경을 50% 했던 부분을 20%로 수정하는 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기존 안에는 1,700만원이었습니다만 20% 감경을 하면 2,720만원이 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된 안건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안건과 관계없는데 추가 질문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네이버가 애드포스트 이용자들이 열람하고 보관하고 있던 메일을 이용자 동의 없이 2,900건을 회수했고, 또 3,264건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관련된 포털서비스이고 이메일 서비스도 하고 있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을 침입해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훼손한 것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에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과기정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심결하지 않았습디다만 과기정통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네이버가 이용자 메일을 회수하거나 삭제한 부분 관련해서 과기정통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조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과기정통부에 통보해 줘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라. 2019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20-23-113)**

○ 한상혁 위원장

- 마지막으로 <의결안건 라> “2019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편성평가 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은 ‘「2019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2019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자 함입니다. <3> 주요내용의 <가> 평가대상입니다. 대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은 사업자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PP 등이 해당되며, 총 157개 사업자(367개 방송국)입니다. 매체별 사업자 개수는 아래 <표>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나> 평가기준입니다. 평가영역 및 배점은 방송법 제31조제1항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내용, 편성, 운영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매체별 점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① 내용영역에서는 프로그램의 질,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등을 평가하고, ② 편성영역에서는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등을 평가하며, ③ 운영영역에서는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등을 평가합니다. 매체별 평가영역별 배점은 본문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평가절차입니다. 먼저 방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방송평가지원단에서 조사·검토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방송평가결과(안)에 대하여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방송평가 심의 결과는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 후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공표하게 됩니다. <라> 평가 결과의 활용입니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반영됩니다. 지상파·종편PP의 경우 총 점수 중 40%가 반영됩니다. <마> '19년도에 실시한 방송평가 대비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법령 위반 등 위반 건당 감점으로 평가되는 항목의 경우, 기본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총점에서 직접 감점합니다. 외주제작 인력 안전강화 및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독립창작자 간 상생강화를 위해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적정성'과 '상생협약체 운영 적정성' 등을 평가 항목에 추가하였고, UHD 프로그램이 본방송을 시작함에 따라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재난방송 의무편성사업자인 SO와 위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난방송 편성 평가'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4> 오늘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5월부터 방송사 대상 설명회 및 방송사 제출 자료 조사·검토 등을 실시하고, 평가결과(안) 심의를 위한 방송평가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제가 방송평가위원장이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은 그 사이 방송평가를 해 오던 내용, 편성, 운영 3개 영역에 대한 평가 기준과 점수 그리고 내용이 기존에 해 오던 방송평가와 대폭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9년도 작년 방송 분부터 올해 평가를 시작하는데 바뀐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여기에 적시해 놓은 것입니다. 각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총점도 조정해서 바뀌어져 있고, 그다음에 안건에 적시해 놓은 대로 기존에는 기본 점수를 주고 거기에서 감점을 하던 사항들, 예를 들어 법령 위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기본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기본점수를 주고 감점을 했더니 변별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총점에서 바로 감점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외주제작 부문에 방통위의 정책목표가 있기 때문에 외주제작 인력 부분, 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상생 부분이 전부 다 점수로 반영됩니다. 물론 UHD 프로그램 본방송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반영됩니다. 그리고 재난방송이 자연적 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도 중요사항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방송 의무편성사업자인 SO, 또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재난방송 편성평가 항목을 신설해서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께서 이상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존경하는 표철수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여쭙보고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영역에서 프로그램의 질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것이 정량적 평가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지요? 사무처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프로그램 질은 KI지수라고 방통위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조사지수가 있습니다. 만족도와 프로그램 질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그 부분에서 나온 점수를 여기에 부분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부분적으로?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안형환 상임위원

- 그리고 운영영역에서 경영의 투명성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하지요?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내부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질 부분은 아무튼 수치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그다음에 경영투명성도 수치화가 가능한 것입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결국은 어떤 제도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문제일 테니까요.

○ 안형환 상임위원

-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치화가 가능하니까 제가 그것은 수궁하겠습니다만

행정관청에서 심의할 때 정말 정성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방금 수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수치의 객관성 여부는 앞으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그런 점은 주의하면서 사실 정부기관이 방송을 평가하고 방송의 질을 평가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화시킬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만, 그 점 앞으로 유의하면서 이런 평가기준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저도 의견 내겠습니다. 이 안건은 매년 시행하는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하는 것이지만 올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표철수 부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4기 위원회에서 방송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견수렴, 또 워크숍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2018년에 방송평가 규칙을 상당 수 개정하고 또한 신설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방송평가 규칙을 올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표철수 부위원장님께서 쪽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평가대상 간의 변별력을 높여서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아주 강화시킨 점 등이 특징입니다. 또한, 방송환경 변화를 평가제도에 반영한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상파와 종편PP의 외주제작과 관련된 공정거래 질서 확립, 그리고 상생협력 강화 평가 항목을 신설한 것이나, 갈수록 중요시되는 재난방송에 대해서 지상파방송은 평가를 강화하고 SO와 위성방송에 대해서도 평가항목을 신설한 점, 그리고 장애인 고용평가와 방송기술 투자평가를 신설하거나 개선한 점, 지상파 UHD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평가에 반영한 것 등도 매우 의미가 깊다고 여겨집니다. 보고된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잘 추진해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수단으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역시 표철수 부위원장님께서 방송전문가다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잘 보완해서 저는 기대가 큼니다. 이미 확정된 안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할 생각은 없고, 다만 편성영역에 보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도 들어가 있는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은 사실상 시청자위원회와 함께 방송자율 규제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방송사 스스로가 자율규제 시스템 안에서 잘 움직이도록 그것을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정도의 판단요소이기 때문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과 함께 여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이것도 어떻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것이 이 안에서 같이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볼 수 없는지...

○ **표철수 부위원장**

- 그것이 내용영역에 들어 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특허사업자들은 방송법상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책임을 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도 그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지 평가를 할 때 객관적인 것, 그래서 평가 대상자가 수궁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21분 폐회 】